



2017. 04. 19

(17-2136)

페이지: 1/2

무역기술장벽위원회

원문: 영어

고지

다음 고지는 10.6 항을 근거로 회람한다.

1.	고지 회원국(Notifying Member): 미국 해당할 경우,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3.2 및 7.2 항):
2.	담당기관(Agency responsible): 식품의약국 (FDA), 보건복지부 (HHS) [1307] 위의 내용과 다를 경우, 고지에 관련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이나 담당기관 이름과 주소(가능한 경우, 전화 및 팩스 번호, 이메일 및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를 표시해야 한다: 의견 제출처: USA WTO TBT 질의처 전자메일: usatbtcp@nist.gov
3.	조항 2.9.2 [], 2.10.1 [], 5.6.2 [], 5.7.1 [], 등에 근거해 고지: X
4.	해당제품(해당할 경우 HS 또는 CCCN 번호, 그렇지 않으면 국정세율 제목. 해당할 경우, ICS 회원국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 화장품. 국내 안전 (ICS 13.120), 화학 공업 제품 (ICS 71.100).
5.	고지 문서의 제목, 페이지 숫자, 그리고 언어: 환경 방위 기금, 지구정의대, 환경실무그룹, 환경건강센터, 건강가정협력기구, 로올라 시카고 법대의 건강 정의 프로젝트, 유방암 기금, 어린이 환경 개선, 소비자연맹, 천연자원 보호위원회, 미국소비자연맹, 미국 학습장애협회, Maricel Maffini, 및 Howard Mielke; 착색제 진정서의 제출 (2 페이지, 영어)
6.	내용 설명: 식품의약국 (FDA 또는 당 국)은 FDA 가 두피의 모발 착색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에 아세트산납의 사용을 허용하는 착색제 규정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기 위하여 환경 방위 기금, 지구정의대, 환경실무그룹, 환경건강센터, 건강가정협력기구, 로올라 시카고 법대의 건강 정의 프로젝트, 유방암 기금, 어린이 환경 개선, 소비자연맹, 천연자원 보호위원회, 미국소비자연맹, 미국 학습장애협회, Maricel Maffini 및 Howard Mielke 가 제기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을 발표한다.
7.	적용할 경우,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적과 근거: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 인간 건강 또는 안전의 보호
8.	관련 문서: 82 공보 (FR) 16321, 2017. 04. 04; Title 21 연방규정집 (CFR) Part 73.
9.	채택 예정일: 향후 결정 예정

시행 예정일: 향후 결정 예정	
10.	의견 마감일: 2017. 06. 05
11.	문건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 국가 질의처 [] 또는 주소, 전화와 팩스 번호, 그리고 이메일과 웹사이트 주소, 해당할 경우, 다른 기관: https://members.wto.org/cnattachments/2017/TBT/USA/17_1936_00_e.pdf